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2019.1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171
----------	--------

2019. 11. 2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민석 의원 외 9인

나. 제 안 일 : 2019. 11. 22.

다. 회 부 일 : 2019. 11. 25.

2.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식생활교육지원법」

2)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19. 11. 21.~ 11. 25.(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식생활 실천과 국민의 건강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16조,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식생활 교육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식사예절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11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 5월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가 2013년 8월 제정 공포된 사항을 봤을 때,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

- 그러나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과거 집에서 식사 예절을 배우던 식생활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먹거리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인식을 높여 식생활에 기본 방향과 실천적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는 사항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임.

생활 습관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인에게 올바른 식생활 지침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건강뿐 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종래의 건강과 영양에 치중된 식생활 교육을 지양하고 사회적 모든 분야 즉 환경, 농업, 예절 등의 분야들과 융·복합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주도하고 환경보전, 농어업 활성화, 전통문화 식생활의 계승·발전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 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